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소식 (KUCST)

■ 2009년도 제1회 이사회 회의록

일 시 : 2009년 1월 15일(목) 오후 6시

장 소 : 지리산아침 (☎02-586-6045)

보고사항 :

1. 성원보고

· 이사회 정원 28명중 참석 12명, 위임 11명으로 제1차 이사회가 성원됨.

(이사) 김응수, 김창규, 김희택, 도춘호, 백성기, 오영제, 윤민중, 윤진산, 이홍림, 임경희, 정윤철(11명)

(감사) 노시태(1명)

(위임장) 강신태, 권영운, 김명수, 김성수, 남인식, 박정극, 오승훈, 이상선, 우종표, 이보원, 최길영(11명)

2. 개회선언

3. 제10회(2008년) 총회 회의록 보고

4. 의안심의

- (1) 의안 제1호: 2008년 재무 결산 및 사업 결산
- (2) 의안 제2호: 편집운영이사회, 산학연관협력위원회, 미래연구위원회 규정 제정의 건
- (3) 의안 제3호: 편집운영이사, 산학연관협력위원, 미래연구위원 추천의 건
- (4) 의안 제4호: 각 전문위원회 담당학회 선정, 업무부담 및 전문위원 추천의 건
- (5) 의안 제5호: 제11회 산학 심포지엄 관련
- (6) 의안 제6호: 제9회 화학산업진흥 심포지엄 관련
- (7) 의안 제7호: 특별회원 추가 영입 건
- (8) 의안 제8호: 편집비에 관한 건
- (9) 의안 제9호: 기타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안심의>

1. 의안 제 1호: 2008년 재무결산 및 사업결산-승인함.

(1) 사업결산

① 회의 개최

회장단 회의 등 각종회의의 총 8회 개최

② 회원 현황 보고

③ 주요 회무 보고

- 연합회 소식지 연 2회 발간
- 제10회 산학심포지엄 개최
- 제8회 화학산업진흥심포지엄 개최
- 연합회 홈페이지 새단장 완료(<http://www.kucst.org>, 8/1)
 - 관리는 대한화학회에서 함.
- 연합회 인명록 발간
- 2008 특별회원 영입(6개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삼성토탈(주), 호남석유화학(주), (주)LG화학, SK에너지(주)
- 정관개정(안) 제1회 이사회 통과, 총회 승인
- 화학산업진흥위원회 규정(안) 제1회 이사회 통과, 총회 승인

· 편집운영이사회 규정(안) 제2회 이사회 통과, 총회 안건 상정, 자구 수정보완 후 차기 이사회에서 확정 승인키로 함.

· 2009년도 신년하례식 일정: 1월 6일(화) 오후3시, SC컨벤션 강남점 아나이스홀(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2) 재무결산

항목	수입		지출		실적
	예산	실적	항목	예산	
정회비	5,000,000	5,000,000	행사비(산학)	5,000,000	6,895,920
화학회관	5,000,000	0	행사비(진흥)	5,000,000	4,948,690
특별회비	4,000,000	9,000,000	인쇄비	3,000,000	3,069,000
찬조금	10,000,000	7,000,000	인건비	3,600,000	3,600,000
이자수입	35,000	708,290	회의비	4,000,000	4,924,170
천년도 미수금	6,000,000	0	통신비	1,500,000	2,041,360
인명록		34,290,000	교통비	1,500,000	2,445,960
이월금	70,184,139	69,420,823	경조비	500,000	600,000
기타		3,249,600	용역비	300,000	209,690
			소모품비	300,000	911,280
			공과금 외수수료	400,000	484,970
			예비비	1,000,000	1,076,000
			차기년도미수금	6,000,000	0
			차기년도이월금	68,119,139	71,820,523
			인명록발간비		23,155,200
			기타		2,485,950
계	100,219,139	128,668,713	계	100,219,139	128,668,713

2. 의안 제2호: 편집운영이사회, 산학연관협력위원회, 미래연구위원회 규정제정의 건

- 규정 제정을 원안대로 승인함.

3. 의안 제3호: 편집운영이사, 산학연관협력위원, 미래연구위원 추천의 건

- 각 학회에서 관련 운영이사 및 위원회별 위원 선임 후 인준을 승인 함.

4. 의안 제4호: 2009년도 각 전문위원회 담당학회 선정, 업무부담 및 전문위원 추천의 건

- 각 학회에서 담당학회의 전문위원을 선임 후 인준을 승인 함.

위원회	년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총무·재정	세라믹	공업	고분자	화공	화학	세라믹	공업
기획·홍보	화학	화학	화학	공업	세라믹	화학	화학
				세라믹	고분자	화학	고분자
산학·협력	화공	고분자	화공	화학	공업	화공	화공
	공업화학	세라믹	공업	화학	공업	고분자	화공
학술·출판	고분자	화공	세라믹	고분자	화공	공업	세라믹

※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해당학회 회장임.

☞ 전문위원회 별 업무부담

- 1) 총무·재정 : 한국세라믹학회
- 2) 기획·홍보 : 대한화학회
- 3) 산학·협력 : 한국화학공학회, 한국공업화학회
- 4) 학술·출판 : 한국고분자학회
5. 의안 제5호: 제11회 산학심포지엄 관련

- 제 5호 제 6호 의안 건은 산학 협력 위원회 담당 학회인 한국

공업화학회와 한국화학공학회에서 업무를 분담한 뒤 주제, 일시 및 장소 등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여 진행하는 것을 승인함.

6. 의안 제6호 : 제9회 화학산업진흥 심포지엄 관련
 - 상동
7. 의안 제7호 : 특별회원 추가 영입 건
 - 승인함.
 - 한화석유화학(주) (허원준 대표이사), 세라믹기술원(김경희 원장)
8. 의안 제8호 : 편집비에 관한 건
 - 편집 관련 인건비(150,000원/월) 증액을 승인함.
9. 의안 제9호 : 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사항 (술어위원회의 건, 연합회지 표지의 건)
 - 종합술어집 개정판 출판 등 술어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술어위원회를 유지하고 활동을 승인함.
 - 5개 정회원 학회의 로고와 10개 특별회원이 포함된 표지로 수정 승인함.

편집운영이사회 규정[안]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화학관련학회 연합회 (이하 “연합회”라 부른다) 내에 설치되는 편집운영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구성) 편집운영이사회는 수석편집운영이사 1명, 편집운영이사 약간 명으로 하고 편집운영 이사 중 1명이 간사가 된다.

제3조(수석편집운영이사) 주무학회의 이사는 수석편집운영이사가 된다.

제4조(편집운영이사) 편집운영이사는 각 정회원 학회에서 1명씩을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약간 명을 위촉한다.

제5조(임기) 수석편집운영이사, 편집운영이사 및 간사의 임기는 회장단의 임기와 같이한다.

제6조(업무) 편집운영이사회는 연합회지의 발간 및 기타 편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학·연·관협력위원회 규정[안]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화학관련학회 연합회 (이하 “연합회”라 부른다) 내에 설치되는 산·학·연·관협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구성) 산·학·연·관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하고 위원 중 1명이 간사가 된다.

제3조(위원장)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산·학·연·관협력위원회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제4조(위원) 위원은 각 정회원 학회에서 1명씩을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약간 명을 위촉한다.

제5조(임기) 위원장,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회장단의 임기와 같이한다.

제6조(업무) 산·학·연·관협력위원회는 연합회의 산·학·연·관 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미래연구위원회 규정[안]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화학관련학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부른다) 내에 설치되는 미래연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구성) 미래연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하고 위원 중 1명이 간사가 된다.

제3조(위원장)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미래연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제4조(위원) 미래연구위원회의 위원은 각 정회원 학회에서 1명씩을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약간 명을 위촉한다.

제5조(임기) 위원장,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회장단의 임기와 같이한다.

제6조(업무) 미래연구위원회는 연합회의 미래 발전을 위한 연구와 연합회의 미래 기획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